|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납세자의 성(시)간 이전을 처리하는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세총발[2015]161호  북경·천진·하북성(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당 중앙 및 국무원의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 추진에 관한 중대한 전략배치와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의 심화> 관련 요구에 따라, 북경·천진·하북 3개 지역 세수 협동발전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의 합리적인 유동 편의를 위해,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납세자가 성(시)간 이전하는 간소화 수속 관련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적용 범위  (1) 납세자는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주소 및 경영장소 변동으로 인해 성(시) 주관세무기관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 관련증서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말소를 신고 처리하고(일조일마[[1]](#footnote-2) 기업은 세금완납신고를 처리함), 또한 규정기한 내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한다.  (2) 납세자는 다음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관련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시)간 이전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1) 신고하지 않은 기록이 있을 경우  2) 각종 체납 또는 과다납부한 세금 및 벌금 또는 체납금이 있을 경우  3) 결산되지 않은 수출퇴(면)세금이 있을 경우  4) 조사가 끝나지 않은 안건이 있을 경우  5) 종결되지 않은 행정처벌,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안건이 있을 경우  6)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비준 중인 문서가 있을 경우  7)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2. 기한 요구  (1)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성(시)간 이전수속을 처리하고, 먼저 납세신고와 증치세 세금계산서 세무신고를 완료하고, 관련된 성(시)간 이전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2) 납세자는 납세신고기한 내 (소득세연도신고 포함), 성(시)간 이전신청 처리를 제기할 경우에는 당기에 기 신고한 세금을 모두 신고 및 결산한 후, 관련된 성(시)간 이전수속을 처리한다.  (3) 납세자는 기존 주관세무기관에 그 세무등기를 말소 또는 <세금완납증명> 발급일로부터 30일 내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해야 한다.  (4) 새로 설립된 일조일마 기업은 공상부분에서 변경등기를 처리를 마친 후, 즉시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무 관련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3. 업무 연결  (1) 납세신고 및 세금징수  성(시) 간 이전한 납세자는 전출 전 모든 납세신고사항을 완료해야 하며, 또한 기 신고한 세금과 체납금 및 벌금과 각종 보충세금을 정산하고, 전출 후 발생하는 관련 퇴세 및 보충세금은 일률적으로 전입지 세무기관에서 완성한다.  (2) 세수우대정책  납세자는 성(시)간 이전 후에는 지역우대정책을 제외하고, 그 기존에 누리던 각종 세수우대혜택은 계속 집행한다. 전출지 세무기관은 징수관리 시스템 내 세수우대정책 관련 조작을 삭제하고, 납세자가 이전하기 전 세무기관에 발송한 관련 등기서류와 심사비준문서를 회수하여, 납세자 파일에 함께 담아 전입지 세무기관으로 인계하고, 전입지 세무기관은 이를 근거로 징수관리 시스템 내 새로 관련 세수우대정책 등기서류 및 심사비준문서를 옮기고, 납세자에게 새로 심사비준수속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관련자격자질  1) 전입지 세무기관은 납제자가 전출지 세무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납세신용등급자질에 대해 인가해준다.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이전 후, 그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계속 등기한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말소를 처리하기 전, 아직 공제할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표>를 작성하며, 증치세 세금계산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기업의 세금계산서 반납 폐기와 보충기록 상황을 확인 해야 한다.  3) “세고은” 전자납세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전출지 세무기관과 “실시간 납세협의"를 중단하고, 전입지 세무기관과 새로 "실시간 납세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4) 세금관리용 기구  ① 납세자가 사용하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업그레이드 버전 전용설비(금세판[[2]](#footnote-3), 세공판[[3]](#footnote-4), 보세판[[4]](#footnote-5) 포함)는 전출지 세무기관에 넘겨 말소회수하고, 납세자는 전입지에서 새로 전용설비를 구매한다.  ② 세공수관기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전출 전 당기 발급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복사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또한 세공수관기 말소승인을 처리한다. (세공카드, 사용자카드 회수)  5) 세금계산서 및 각종 증서  ① 납세자가 성(시)간 이전, 전출 전 전출지 세무기관에 그 결산하고 남은 모든 공백 세금계산서(각종 세공시스템 중 전자 세금계산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구매 장부를 반납 폐기신고 한다.  ②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이전 후 취득한 기존 납세자 식별번호의 세금계산서 교환 수속 후, 공제신고를 다시 진행한다.  ③ 기타 관련 증서는 전출지 세무기관에서 회수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전입지 세무기관에 전달하여 이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6) 심사결정 징수  비율을 정해 징수를 실행하는 납세자는 전입지 세무기관이 원칙상 계속 전출지 세무기관 심사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만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심사결정 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 감사징수를 실행할 경우, 전입지 세무기관은 감사징수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한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정액징수를 실행하는 납세자는 성(시)간 이전처리 시, 전출지 세무기관은 그 심사결정 징수정보를 폐지하고, 전입지 세무기관이 구체적인 징수방식을 확정한다.  7) 파일자료인계  납세자가 성(시)간 이전을 처리할 때, 전출지 세무기관은 전입지 세무기관에 납세자의 납세파일을 인계하고, 또한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첨부1 상세참고)을 작성한다.  납세자는 이하의 자료를 근거로 이전수속을 처리한다.  ①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아직 공제할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표>를 제공해야 하고, 전입지 세무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증치세 매입세액의 초기화 처리를 진행한다.  ② 전출지 주관세무기관 공장이 찍힌 전출 전 세금완납을 처리한 <증치세 납세신고서> 및 부속표와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 및 부속표를 제공한다.  전출지 세무기관이 파일에 대해 이미 디지털화 처리를 진행한 경우, 세무기관 공장이 찍힌 디지털 영상 복사본을 인계할 수 있다. 북경·천진·하북 내 인터넷 정보교환 플랫폼 구축을 완성한 후, 성간 이전 전자파일 자료는 인터넷 정보 교환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다.  전출지 세무기관은 인계파일자료의 완정성을 책임져야 하며, 봉인하고 그 위에 날인한 후, 교환 또는 기타방식을 통해 파일자료와 같이 전입지 세무기관에 전달하고, 또한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를 작성한다. (첨부2 상세참고) 전입지 세무기관은 확인 수령 후,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 영수증을 종이 또는 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전출지 세무기관에 되돌려 보낸다.  전입지 세무기관은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을 전송한 <납세자 이전통지서> (첨부3 상세참고)를 수령한 후, 당일 종이 또는 전자방식을 통해 전출지 세무기관에 되돌려 보내고, 또한 3일 내 주동적으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해, 납세자가 기간에 맞춰 세무등기 및 납세신고 등 관련수속을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4. 구체적 업무 조작  (1) 전출지 세무기관 업무절차  1) 성(시)간 이전 납세자는 전출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말소신청 심사비준표> (일조일마 기업은 <세금완납신고서>작성)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신고된 세금과 체납금 및 벌금과 각종 보충세금을 정산한다.  2) 전출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세금정산표 및 세금징수증서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3) 전출지 세무기관은 상술한 관련 사항을 처리한 후, 징수관리 시스템에서 전출처리를 진행하고, <납세자 이전통지서> 3 부를 작성하고(1부는 전출지 세무기관 보관용, 1부는 전입지 세무기관 확인용, 1부는 납세자가 전입지 세무기관에서 세무관련 사항 처리 시 검수용), 납세자에게 규정된 시간 내 전입수속 처리를 하도록 통지한다.  4) 전출지 세무기관은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과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를 작성하여, 전입지 세무기관에 납세자 파일 및 기타 납세자료를 인계한다.  (2) 전입지 세무기관 업무절차  1) 납세자는 <납세자 이전통지서>, 변경 후 영업집조 부본 및 사본과 기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전입지 세무기관 등기부문에서 전입수속을 처리한다.  2) 전입지 세무기관은 "세무파일"과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 및 <납세자 이전통지서>등 자료를 대조 심사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 징수관리 시스템에서 세무등기 조작을 진행한다.  3) 전입지 세무기관은 전입수속을 모두 처리한 후,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전출지 세무기관에 회신하고, 납세자에게 규정기한 내 그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 등 세무 관련 사안을 처리하도록 공지한다.  첨부 : 1.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  2.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  3. 납세자 이전통지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1275/content.html>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31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京津冀范围内纳税人办理跨省（市）迁移有关问题的通知**  税总发〔2015〕161号    北京、天津、河北省（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按照党中央、国务院关于推进京津冀协同发展的重大战略部署和《深化国税、地税征管体制改革方案》有关要求，为促进京津冀三地税收协同发展，进一步减轻纳税人负担，便利企业合理流动，现将京津冀范围内纳税人跨省（市）迁移简化手续有关问题通知如下：  　　一、适用范围  　　（一）纳税人在京津冀范围内，因住所、经营地点变动涉及改变省（市）主管税务机关的，应当持有关证件和资料，向原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注销税务登记（一照一码户办理清税申报），并在规定期限内向迁入地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  　　（二）纳税人存在以下情况的，在未办结有关事项前，不得办理跨省（市）迁移手续：  　　1.有未申报记录的；  　　2.有各类欠缴或多缴税款、罚款或滞纳金的；  　　3.有未结清的出口退（免）税款的；  　　4.有未结稽查案件的；  　　5.有未结行政处罚、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案件的；  　　6.有未处理完的在批文书的；  7.税务机关规定的其他情形。    二、时限要求  　　（一）增值税一般纳税人办理跨省（市）迁移手续，应先完成纳税申报和增值税发票报税，再办理有关跨省（市）迁移手续。  　　（二）纳税人在纳税申报期内（含所得税年度申报），提出办理跨省（市）迁移申请的，应完成当期全部申报并结清已申报税款后，办理有关跨省（市）迁移手续。  　　（三）纳税人应自原主管税务机关注销其税务登记或开具《清税证明》之日起30日内向迁入地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  　　（四）新设立的一照一码户在工商部门办理完变更登记后，应及时到迁入地税务机关办理有关涉税事宜。  　　三、业务衔接  　　（一）纳税申报及税款征收  　　跨省（市）迁移的纳税人，迁出前应完成全部纳税申报事项，并结清已申报的应纳税款及滞纳金、罚款和各类查补税款，迁出后发生的相关退、补税款，一律由迁入地税务机关完成。  　　（二）税收优惠政策  　　纳税人跨省（市）迁移后，除区域优惠政策外，其原享受的各项税收优惠延续执行。迁出地税务机关在征管系统内取消相关税收优惠政策操作，收回纳税人迁移前税务机关送达的有关备案、审批文书，归入纳税人档案一并移交迁入地税务机关，迁入地税务机关据此在征管系统内重新流转相关税收优惠政策备案、审批文书，不得要求纳税人重新办理审批手续。  　　（三）相关资格资质  　　1.迁入地税务机关对纳税人由迁出地税务机关认定的纳税信用等级资质予以认可。  　　2.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后，其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延续登记。纳税人办理注销税务登记前，尚有未抵扣进项税额的，迁出地税务机关应填报《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进项税额转移单》，在增值税发票系统升级版中核实企业的发票缴销、补录情况。  　　3.使用“税库银”电子缴税方式的纳税人，应与迁出地税务机关终止“实时缴税协议”，在迁入地税务机关重新签订“实时缴税协议”。  　　（四）税控机具  　　1.纳税人使用的增值税发票系统升级版专用设备（包括金税盘、税控盘、报税盘）交由迁出地税务机关注销收回，纳税人在迁入地重新购置专用设备。  　　2.使用税控收款机的纳税人迁出前应抄报当期开票数据，报送相关资料并办理税控收款机注销核准（收回税控卡、用户卡）。  　　（五）发票及各类证件  　　1.纳税人跨省（市）迁移，迁出前应向迁出地税务机关申请缴销其全部结存空白发票（包括各类税控系统中的电子发票）及发票领购簿。  　　2.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后取得的原纳税人识别号发票需办理换票手续后，再进行申报抵扣。  　　3.其他有关证件应由迁出地税务机关收缴或由纳税人交迁入地税务机关据以办理相关手续。  　　（六）核定征收  　　实行定率征收的纳税人，迁入地税务机关原则上继续按照迁出地税务机关核定内容执行，如需要调整，应重新制作相关核定文书。如符合有关规定需实行查账征收的，迁入地税务机关可以改为查账征收方式，并书面通知纳税人。  　　实行定额征收的纳税人办理跨省（市）迁移时，迁出地税务机关取消其核定征收信息，由迁入地税务机关确定具体征收方式。  　　（七）档案资料移交  　　纳税人办理跨省（市）迁移，迁出地税务机关应向迁入地税务机关移交纳税人的纳税档案，并填制《移交纳税登记户资料清单》（详见附件1）。  　　纳税人凭以下资料办理迁移手续：  　　1.增值税一般纳税人尚有未抵扣进项税额的，应提供《增值税一般纳税人迁移进项税额转移单》，迁入地税务机关据此进行增值税进项税额的初始化处理。  　　2.提供加盖迁出地主管税务机关公章的、迁出前清税处理完毕的《增值税纳税申报表》及附表、《企业所得税纳税申报表》及附表。  　　迁出地税务机关已对档案进行数字化处理的，可以移交加盖税务机关公章的数字图像影印件。京津冀内网信息交换平台搭建完成后，跨省迁移电子档案资料可利用内网信息交换平台进行数据交换。  　　迁出地税务机关应负责移交档案资料的完整性，封存并加盖封存章后，通过交换或其他方式随同档案资料一并送往迁入地税务机关，并填写《税源户移交签收单》（详见附件2）。迁入地税务机关查收后，应将《税源户移交签收单》回执通过纸质或电子邮件方式返回迁出地税务机关。  　　迁入地主管税务机关接到迁出地主管税务机关递送的《纳税人迁移通知书》（详见附件3）后，应于当日通过纸质或电子方式回复迁出地税务机关，并在3日内主动与纳税人取得联系，敦促纳税人按期办理税务登记及纳税申报等相关手续。  　　四、具体业务操作  　　（一）迁出地税务机关业务流程  　　1.跨省（市）迁移纳税人向迁出地税务机关填报《注销税务登记申请审批表》(一照一码户填制《清税申报表》)，并结清其已申报税款及滞纳金、罚款和各类查补税款。  　　2.迁出地税务机关负责办理纳税人的结税清票、收缴证件等相关工作。  　　3.迁出地税务机关办理完上述有关事项后，在征管系统中进行迁出处理，填制《纳税人迁移通知书》一式三份（一份由迁出地税务机关留存，一份送迁入地税务机关确认，一份交纳税人到迁入地税务机关办理涉税事项时校验），并通知纳税人在规定的时间内办理迁入手续。  4.迁出地税务机关填制《移交纳税登记户资料清单》和《税源户移交签收单》，并向迁入地税务机关移交纳税人档案及其他纳税资料。  　　（二）迁入地税务机关业务流程  　　1.纳税人持《纳税人迁移通知书》、变更后的营业执照副本及复印件和其他有关资料等，到迁入地税务机关税务登记部门办理迁入手续。  　　2.迁入地税务机关将“税务档案”和《移交纳税登记户资料清单》与《纳税人迁移通知书》等资料核对无误后，在征管系统中进行税务登记操作。  　　3.迁入地税务机关办理完毕迁入手续后，填写《税源户移交签收单》回执回复迁出地税务机关，并告知纳税人在规定期限内到其主管税务机关办理申报纳税等相关涉税事宜。    　附件：1.[移交纳税登记户资料清单](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1275/part/1991292.doc) 　　　　2.[税源户移交签收单](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1275/part/1991293.doc)  　　　　3.[纳税人迁移通知书](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1275/part/1991294.doc)  国家税务总局  2015年12月31日 |

1. 공상국, 질검국, 세무국이 기업에게 각기 다른 증서와 코드번호를 부여하던 과거 행정실무를 개선하여 공상국이 통합하여 1개의 증서와 1개의 코드번호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 [↑](#footnote-ref-2)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footnote-ref-3)
3. 실시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관리, 저장, 세금계산을 해주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footnote-ref-4)
4. 세금계산서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세금관리용 설비 [↑](#footnote-ref-5)